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 국민과 함께 평창 올림픽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**보 도 자 료** 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과 채규남 과장, 전성규 사무관(5865)
덤핑조사과 고재강 과장, 김주현 사무관(5876)
불공정무역조사과 정병락 과장, 정종윤 사무관(5881), 김종권 사무관(5886)

무역위원회, 일본 · 인도 ·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계속 부과키로

- 자석완구 상표권·디자인권 침해 조사사건,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신희택)는 '17. 3. 17.(금) 제364차 회의를 열고, 세아창원특수강, 세아특수강, 동일제강이 요청한 일본,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건을 향후 3년간 3.56~15.39%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해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.

* 일본, 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서는 '04.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임

○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, 공청회 등 조사를 실시한 결과, 이들 국가의 생산 및 수출 확대 여력과 덤핑률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하면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부과를 건의하기로 최종 판정했다.

* '15년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규모 : 약 3,600억원, 약 9만톤
 -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56.3%, 일본산 1.2%, 인도산 8.4%, 스페인산 0.0%, 기타국산 34.1%

○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('16.6.3.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

□ 이와 함께, 무역위원회는 상표권·디자인권·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 4개 사건에 대한 판정 결과, 2건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고, 2건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했다.

○ ㈜짐월드는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와, 자사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자석완구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업체 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했었다.

-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, 국내업체 2개사에 대해 해당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결정했다.

○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가 조사신청한 '다중연결 블루투스 특허권 침해조사' 1건과 엘에스전선㈜가 신청한 '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조사' 1건에 대해서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피해조사과 전성규 사무관(044-203-5865), 덤핑조사과 김주현 사무관(044-203-5876), 불공정무역조사과 정종윤 사무관(044-203-5881), 김종권 사무관(044-203-58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| **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재심 최종판정 개요**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(요청일) : 세아창원특수강㈜, ㈜세아특수강, 동일제강㈜('16.3.29.)

○ 피요청인 : 일본 산요 등 3개社, 인도 비라즈 등 4개社, 스페인 2개社

○ 재심사대상물품

- 품명 : 스테인리스스틸바 (Stainless Steel Bar)

 *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(中空)이 없는 원형강(round bar)·각강(square bar)·육각강(hexagonal bar)·평강(flat bar)인 제품

- 용도 : 첨단정밀산업, 자동차부품, 화학기계, 건설자재, 기타의 산업설비

□ 국내시장 현황 ('15년 기준)

○ 국내생산자 : 세아창원특수강㈜, ㈜세아특수강, 동일제강㈜ 등 3개사

○ 국내시장규모 : 약 3,600억원 / 약 9만톤

 * 스테인리스스틸바 국내시장 점유율(물량 기준) : 국내산 56.3%, 일본산 1.2%, 인도산 8.4%, 스페인산 0.0%, 기타국산 34.1%

□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 부과(안)

공급국	공급자	연장조치 건의수준
일본	산요, 다이도, 아이치	15.39%
	그 밖의 공급자	15.39%
인도	비라즈	3.56%
	비너스, 뮤칸드, 판츠마할	15.39%
	그 밖의 공급자	15.39%
스페인	아세로스, 로르단	15.39%
	그 밖의 공급자	15.39%

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o 조사개시일 ('16.6.3.), 공청회('16.11.24.), 최종판정('17.3.17.)

붙임 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·판정 개요**

1. 자석완구 상표권·서비스표권 침해 조사건

□ (개요) ㈜짐월드는 국내업체 A社가 자사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*을 침해한 자석완구를 수입하여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8.17)

* 상표 제0798892호, 0907356호, 1108294호, 서비스표 제0248008호, 0248009호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 결정('16.9.6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11월~12월) → 현지조사('16.12.23, '17.1.13) → 전문가 감정('17.1.23) → 무역위 의결('17.3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A社가 자석완구를 수입·판매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(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)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,

- o A社에 대해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,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13,328,600원 부과를 결정함

2. 자석완구 디자인권 침해 조사건

□ **(개요)** ㈜짐월드는 국내업체 B社 및 해외업체 C社가 자사의 디자인권*을 침해한 자석완구를 수입·판매 및 국내에 공급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8.17)

* 디자인 제0662016호, 제0662017호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 결정('16.9.6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11월) → 현지조사('16.12.23, '17.1.12) → 무역위 의결('17.3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B社와 C社가 자석완구를 수입·판매하고 국내에 공급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조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고,

- o 국내업체 B社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,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과징금 470,370원을 부과하고, 해외업체 C社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반입배제를 결정함

3. 다중연결 블루투스 특허권 침해 조사건

□ **(개요)** 블루투스 주변기기의 특허권자는 국내업체 D社와 E社 등이 자신의 특허권*을 침해한 마우스를 각각 수입·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9.8.)

* 특허 제1451676호(다중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슬레이브 기기)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 결정('16.9.28.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10월~12월) → 당사자회의('17.2월) → 기술설명회('17.2월) → 무역위 의결('17.3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D社와 E社 등이 각각 마우스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조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

4. 냉매관 절단장치 특허권 침해 조사건

□ **(개요)** 엘에스전선㈜는 국내업체 F社가 자사의 특허권*을 침해한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·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('16.7.8)

* 특허 제1103429호(냉매관 이송장치)

□ **(조사경과)** 조사개시 결정('16.7.27.) → 당사자 의견교환('16.9월~'17.2월) → 피신청인 현지조사('16.11.7.) → 기술설명회('16.12.16.) → 무역위 의결('17.3.17)

□ **(무역위 의결)** F社가 냉매관 절단장치를 제조하여 수출한 행위는 「불공정무역조사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